

-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-

조례 · 규칙안 심사보고서

○ 일 시 : 2023. 2. 28.(화) 10:00

○ 장 소 : 본회의장

○ 안 건

-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의회 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2.

나. 발 의 자 : 차순임 의원 외 6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2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년 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차순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고,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제3항)
- 문장부호 등 맞춤법 교정에 관한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화성시지부 공무원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이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맺음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2.

나. 발 의 자 : 유재호 의원 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2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년 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유재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의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·감독을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고, 혼합형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제1항)
- 정책지원관의 복무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게함으로써 화성시의회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지휘·감독권자를 사무국장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2.

나. 발 의 자 : 전성균 의원 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2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년 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전성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과 위원의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사전협의와 허가 및 출장계획서·보고서 관련 행정절차를 구체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
-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두어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허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심사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~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항임
- 또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범위에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